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조사·컨설팅, 파트너 발굴, 홍보·마케팅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스포츠기업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 1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모집안내

◆ 모집기간: 2026. 1. 14. ~ 2. 10. 18:00까지

◆ 모집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1. 사업목적

- 유망 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모집개요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2억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까지
- 지원자격 :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업력 만 1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용품·시설·서비스업 매출액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최근 결산년도는 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4년)를 기준으로 하되, '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 등으로 대체 가능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자격 제외대상>> -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당해연도(2026)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개별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공동관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확약서 제출)
-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 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사업중단, 사업포기 등에 따른 제재 기준(참여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
-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중도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3. 지원계획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최대 200백만원(지원한도 내 총사업비의 70%/자부담 30%)

세부 지원사항

지원분야	프로그램	지원내용
해외 시장조사 컨설팅	전략수립	■ 경영환경 분석, 전략 및 실행과제 수립, 로드맵 구성 등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시장조사	■ 현지시장 동향, 소비자 리서치, 바이어 발굴조사 등 전문 조사기관을 활용한 해외시장 조사
	법무·세무·회계	■ 해외법인 설립, 계약, 회계감사, 세무조사 등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해외용 콘텐츠 개발	상품 개발	■ 해외진출용 신규 상품, 디자인 등 개발 용역비
	브랜드 개발	■ 해외진출용 브랜드(BI·CI) 및 어플리케이션(굿즈·쇼핑백 등) 개발
	홍보물 제작	■ 상품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영상, 카탈로그 등) 제작
현지 사업운영 준비	지재권·특허	■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등록 등
	솔루션 사용	■ 모듈화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사용료
	홈페이지·앱 제작	■ 해외진출용 홈페이지 및 앱 제작

지원분야	프로그램	지원내용
파트너 발굴	전시화수출상담회	■ 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전시품 운송비 등
	사업설명회	■ 해외 사업설명회 주최 및 기업 IR 참가
	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 및 샘플 송부 시 운송·통관비
홍보 마케팅	오프라인	■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 홍보 및 마켓 테스트 등
	온라인	■ 해외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SNS 판촉 홍보 등
	미디어	■ 해외 매스미디어, 옥외광고 등 활용 홍보
해외진출 실무 지원	통번역	■ 비즈니스, 계약·법률 문서 등 통번역
	서류 대행	■ 수출선적·통관·계약·대금결제 등 수출 관련 서류 대행 지원
	보험·보증	■ 단기수출·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국외기업 신용조사 등
	수출관련 검사	■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용 지원(용수검사 포함)
	물류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자 부담 물류비 *최대10백만원
	역량강화 교육	■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교육, 제품개발 등 외부교육 수강료

□ 지원방안

○ 지원체계

지원방식	지원비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원분야'에서 각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 • 직접 또는 전문기관(수행기관)을 통하여 과제 수행 • 총 사업비 내 과제별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배분 	총 사업비의 70% (자부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당 보조금은 최대 200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총 사업비</th> <th>보조금</th> <th>자부담</th> </tr> </thead> <tbody> <tr> <td>286백만원</td> <td>200백만원 (70%)</td> <td>86백만원 (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분야 이상 신청 필수 (단, 과제 수는 최대 5개로 제한) • 보조금 최소 1.5억원 이상 사용 필수 • 과제당 총사업비 상한금 1.6억원으로 제한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286백만원	200백만원 (70%)	86백만원 (30%)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286백만원	200백만원 (70%)	86백만원 (30%)						

* 필요 시 공단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과제기간, 과제내용 등 변경 가능

○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 국가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 과제수행 매뉴얼 및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을 배포

*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정산보고서의 검증)에 의거, 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의 경우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절차에 대한 전문회계기관의 검증 필수

** 자기부담금은 우선집행(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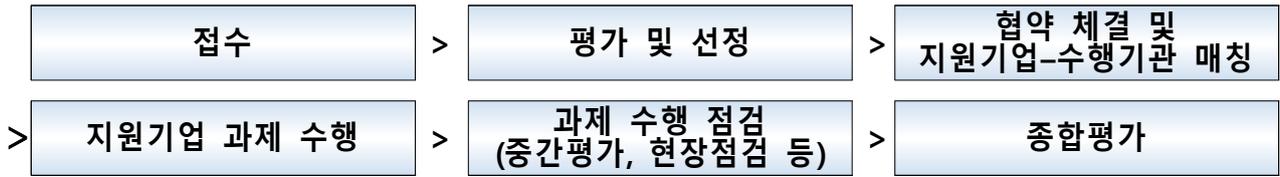
<지원금 집행가능 세목>

* 수행지침 수립에 따른 변동 가능

인건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일반용역비, 연구개발비

※ 인건비 집행기준 :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제외) 내 연구전담인력이 「해외용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내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인건비 사용 가능 (60백만원 한도, 지원인력당 인건비의 70%이내(대표·임원 인건비 지원 불가))

□ 지원절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 14 ~ 2. 10

□ 제출처: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

□ 제출방식 : 온라인 지원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회원가입 및 접수등록 권장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1식

«필수서류»

- ① 사업신청서 1부(홈페이지 공지)
 - 사업신청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 * 비계량평가 대상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 ②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약약서 각 1부
- ③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 ④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조회기간 2025.12.31.~2025.12.31.)
- ⑦ 확정 재무제표(2024년 기준) 1부
 - * '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5년) 등으로 대체 가능
- ⑧ 스포츠산업(스포츠용품·시설·서비스업) 매출 비중 증빙자료(2024년 기준)
 - 스포츠산업 관련 매출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 20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불가피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년 기준) 등으로 제출할 경우, 스포츠산업 매출 비중 증빙자료도 2025년 기준으로 제출
 - ** 품목명 등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매출임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⑨ 수출실적 증빙자료

제출
서류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직접 수출증명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혹은 한국무역협회
그 외 수출실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실적증명서(KTnet)

«추가자료(제출 가능 기업에 한함)»

- ① 사업연계 증빙자료(가점)
 - '23~'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지원사업 수료증(선정 공문, 협약서 등)
 - '23~'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선도·예비선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료증(선정 공문, 협약서 등)
 - '23~'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SKL(스포츠코리아랩) 입주기업 계약서 사본
- ② 기술마켓 증빙자료(가점)
 - KSPO 기술마켓 등록 확인 서류
- ③ 정책부합도 증빙자료(가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의 우수스포츠기업」수상기업, 중소벤처기업부「TIPS」선정·수료기업,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친환경 인증 보유 기업에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 계량평가 및 가점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여야 함(증빙자료 미비 시 점수 불인정)

5. 참여기업 선정

□ 선정절차



□ 선정평가

○ 평가방법: 계량평가(40점) + 비계량평가(60점) + 가점

* 계량·비계량평가 및 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

① 계량평가(서면평가 + 가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량 평가 (40)	성장잠재력(25)	○ 수출액(2025년 기준)	
		○ 매출액(2024년 기준)	
	재무건전성(15)	○ 유동비율(2024년 기준)	
		○ 자기자본비율(2024년 기준)	
		○ 영업이익률(2024년 기준)	
가 산 점	신규기업 (3점)	○ '24~'25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미참여 기업	
	사 업 연 계	최대 1점 ○ '23~'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	
		1점 ○ '23~'25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선도·예비선도 기업 육성 지원사업 수료기업	
		1점 ○ '23~'25년 SKL(스포츠코리아랩) 입주기업 * 중도퇴거기업 미인정	
기술마켓 (3점)	○ KSPO 기술마켓 등록기업		
정 책 부 합 도 (최대5점)	<구 분>		점수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기업		1
	-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수상기업		1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1
	-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수료기업		1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1
	- 고용노동부 인증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
	- 고용노동부 인증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
- 친환경 인증 기업(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1	
①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인증기업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인증기업			
③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비고	- 서면평가 원점수와 가산점의 합은 계량평가 배점(40점)을 초과하지 못함		

* 2025년 이후 설립 기업 등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5년)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재무건전성(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최하점 부여

※ 계량평가 결과 기준 최종 선정기업 수의 2배수 이내로 비계량평가 실시(고득점 순, 10점 이상인 기업 한정)

② 비계량평가(발표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발표평가 (60)	사업계획의 적정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 계획이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중장기 계획 수립 적정성
	상품경쟁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독자적 경쟁력(시장경쟁력) ○ 상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 ○ 수출 경험 및 사업추진 적격성
	수출역량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수출 경력 ○ 수출 전담인력 보유 ○ 해외 거래선 보유 등 수출 인프라
	성과목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도전성, 적정성 및 측정가능 여부 등

별지서식(사업신청서, 협약서,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양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https://spobiz.kspo.or.kr>

선정결과: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6.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담당자 : 이윤정 주임 (02-410-1543/yoonlee7070@kspo.or.kr)

2026. 1. 1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